

대학원 시간제 학생 운영 세칙

제정 1992. 6. 9 개정 2020.11. 2

개정 1998. 3. 1 개정 2025. 2. 1

개정 2020. 6.17

제1조(목적 및 적용범위)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대학원 과정의 시간제 학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 (개정: 2020.11.2)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시간제 학생”이라 함은 교내외 연구소 등의 기관에 재직하면서 본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여 이 규정에 따라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. (개정: 2020.11.2)
2. “전일제 학생”이라 함은 “시간제 학생” 이외의 대학원 학칙에 따라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승인절차) ① 시간제 학생으로 재학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지원 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와 소속기관장 추천서를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: 2020.11.2)

② 전일제로 재학중인 학생이 시간제로 전환하거나 시간제로 재학중인 학생이 전일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(삭제) (개정: 2020.11.2)

제4조(학기당 취득학점) 시간제 학생은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매학기 3학점 이상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,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 (개정: 2020.6.17)

제5조(재학년한) 시간제 학생의 재학년한은 석사과정 4년, 박사과정 8년, 통합과정은 9년으로 한다. (개정: 2020.11.2)

제6조(박사자격시험) 시간제 학생은 입학후 3년 이내에 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2회 불합격시는 제적한다.

제7조(상주재학의무) (삭제) (개정: 2020.11.2)

제8조(인원의 제한) 학과별 시간제 학생의 허용인원은 각 학과 해당과정 모집인

원의 1/3 이내로 한다. (개정: 2020.11.2)

제9조(조교임용 및 장학금 지급의 제한) 시간제 학생은 학생조교로 임용치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지도교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나 이 경우에도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등록금) 시간제 학생의 등록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입학 후 석사과정 4학기, 박사과정 4학기, 통합과정 8학기까지: 등록금 전액 (개정: 2020.11.2.) (개정: 2025.2.1)

2. 입학 후 석사과정 4학기, 박사과정 4학기, 통합과정 8학기 초과 시: 수업료의 1/3에 해당하는 금액 (개정: 2020.11.2.) (개정: 2025.2.1)

제11조(기숙사 및 아파트입주) 시간제 학생은 기숙사 및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. 다만,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 이 경우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(개정: 2020.11.2)

제12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본 대학 학칙 및 대학원학칙에 따른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1992년 6월 19일부터 제정하여 199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1992년 4월 1일 이전부터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이 시간제로 전환할 경우 사용중인 기숙사 및 아파트는 전일제 학생과 동일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6월 17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1월 2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